

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사례 1 2020전북조정17·18 / 정정·반론청구

시의성을 요하는 선거보도 분쟁에서 신청인의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것으로 취하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이 다량 유포되고 있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문자를 다량 발송한 것이 아니고 소수의 지인에게 발송한 것이며 예비후보 등록 진행상황 등을 공유한 것인데 마치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보도해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해당 문자는 B후보가 친인척, 지인 등에게 예비후보 등록 진행상황과 소문을 송부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다량 유포한 것은 아니다.
- 당사자 확인 없이 마치 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보도되어 유감이다.

■ 조정결과

심리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도자료를 보내오면 게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이 사건 조정은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A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특히 문자메시지는 7명의 C정당 입지자 가운데 4명을 부적합한 것처럼 묘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다량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는 C정당 7명의 입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적고 엄지로 표시했다. [중략]

경찰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파악하고 있다”며 “만일 입후보 예정자가 이러한 문자를 보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취하 후 보도문

보도내용

B / A군수 예비후보가 물과 시장, 광장을 기본 공약으로 제시했다.

B예비후보는 22일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는 물과 시장, 광장 등 3대 기본 요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B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A군은 물은 있으나 깨끗하지 않고 시장은 있지만 재래시장 구실을 못하고 있다. 또 A군에는 광장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

B예비후보는 “3가지 기본 요건이 갖춰져야 A군이 살아날 수 있다”며 “군수가 되면 이를 기본으로 정책을 펼쳐나겠다”고 했다.

먼저 현재 공사 중인 시장 앞 아파트단지 하단을 평탄작업하고 쌍다리~터미널 구간의 하천을 복개해 A군의 중심 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B예비후보는 “중심 광장은 평소 농산물 상설시장으로 운영하고 주말에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며 “A군의 모든 축제와 행사는 중심광장에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D담 물을 A천에 일정량 흐르도록 조성 △F둘레길 조성 △숙박단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B예비후보는 “A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A군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경영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중앙과 폭넓은 인맥을 가진 저만이 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B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소수의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예비후보 등록 진행상황을 알린 것인데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노출이 돼 오해를 사게 됐다”면서 “누구를 음해하려는 행위는 아니었다.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 2 2020서울조정422 / 정정청구

신청인이 에이전시를 담당하는 회사의 상품을 타 업체가 제작, 수상한 것처럼 작성한 보도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정보도 및 사과문을 게재하고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내 에이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 A사 상품의 사진 등을 사용하여, 해당 상품을 국내 B사가 제작했으며 디자인 어워드에 참여해 수상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B사가 디자인 어워드에 참여해 수상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이 국내 에이전시를 맡고 있는 A사의 홈페이지에서 복사한 사진을 사용하여 마치 B사가 제작·수상한 것처럼 허위보도 해 영업활동에 피해를 입혔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B사가 디자인 어워드에 참여해 수상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조정대상보도에서 사용한 상품 사진은 독일 A사의 상품이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심리 개최 전 신청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조정대상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였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디자인 어워드에서 B사가 수상한 바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 및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 사건 조정은 취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B사는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불리는 '2020년 독일 디자인 어워드' 명품 상품 부문에서 우수 상품 디자인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또 한 번 국제적인 어워드에서 브랜드 디자인과 편의성을 인정받은 것.

독일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디자인 협회가 1969년 제정한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로, 까다로운 참가 자격과 함께 주최 측이 직접 초청한 작품에 한해서만 심사한다는 점에서 국제 디자인



어워드의 ‘챔피언십 대회’로 불리기도 한다. [중략]

B사 관계자는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가는 B사의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브랜드 디자인 발굴과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겠다”라고 밝혔다.

■ 조정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B사가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사는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돼 바로잡습니다. 독일 A사의 한국 에이전시인 C사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사례 3 2020서울조정515·516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파업 당시 시민과 장애인 등을 집단폭행했고, 회사를 비난하는 선전물을 수차례 배포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사 옥쇄파업 당시 노조원들이 일반 시민과 장애인 등을 집단폭행했고 최근에는 복직자들로 구성된 소모임이 회사를 비난하는 선전물을 수차례 배포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옥쇄파업을 진행한 노조원들은 당시 도장공장 안에 있어 일반 시민 등을 만날 수조차 없었고 최근 들어 선전물을 수차례 배포한 바가 없는데도 이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8천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사 노조원들은 일반 시민과 장애인 등을 집단폭행하지 않았으며, 복직자들로 구성된 소모임이 회사를 비난하는 선전물을 배포한 바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보도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손해배상 청구는 신청인측의 당사자능력 흠결로 각하하고 보도내용 중 노조원들이 일반 시민과 장애인 등을 집단폭행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점을 들어 정정보도 게재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무분규를 유지한 A사에도 갈등의 싹이 트고 있다. A사 노조는 지난해 9월과 12월 실시한 자구노력을 통해 임금 반납, 사내복지 축소 등의 조치에 앞장선 바 있다. 교섭권을 가진 기업노조는 여전히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0년 전 옥쇄파업



사태를 주도했던 복직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A사 옥쇄파업은 2009년 전체 임직원의 36%인 2600여명이 정리해고되자 노조원들이 반발해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벌인 파업을 지칭한다. 공장에 있던 쇠파이프와 볼트 등은 자동차 부품에서 무기로 돌변했고, 도장용 시너와 페인트는 폭탄이 됐다. 이들은 사제 총을 만들어 경찰과 사측 관계자들을 공격했고, 일반 시민과 장애인 등을 집단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결국 대테러 장비를 사용한 경찰특공대가 강제 진압하면서 옥쇄파업이 끝났다. [중략]

A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복직자들로 구성된 소모임이 회사를 비난하는 선전물을 수차례 배포했다. 2016년 B플랫폼을 C사에 헐값으로 넘겼고 이제는 D플랫폼을 같은 방식으로 넘기려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결국 A사의 수익이 악화됐고, 경영악화의 책임은 사측과 노조에 있다는 주장이 붙었다. [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자동차 업계 내 노조갈등을 보도하면서, A사에서의 이른바 옥쇄파업 당시 A사 노조원들로부터 일반 시민 등이 집단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사 옥쇄파업 노조원들이 일반 시민과 장애인 등을 집단폭행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동차>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기하고 그 제목을 선택하면 보도문 본문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4 2020대구조정41 / 정정청구

이미 정정보도가 게재된 바 있으나 보도내용이 신청인이 요구하는 취지와 다르고 사전에 문안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정정보도를 다시 방송하도록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방송사인 피신청인은 방역업체, 도시락 업체 관계자 등의 인터뷰를 토대로, 신청인 A시(市)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교부받고도 방역업체 등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시는 교부받은 긴급예산은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어 방역소독비 등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운영비는 법률 등에 의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A시가 관련 예산을 교부받고도 집행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시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긴급예산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어 병원 방역소독비와 도시락대금과 같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A시가 국가로부터 관련 예산을 교부받고도 집행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의 문제제기가 있을 후 조정대상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담아 정정보도를 게재했으므로 더 이상의 정정보도를 방송할 의사가 없다고 항변했다.

중재부는 양 당사자가 구체적인 정정보도의 내용이나 게재방식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해당 보도의 내용이 신청인이 원하는 청구취지와 다르다며 직권으로 정정보도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방역업체 대표

50여일 정도 일을 하면서 결제를 부탁한 것이 최소한 15번, 20번은 결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A시에서 어떤 얘기가 없고.

대형병원에 도시락을 제공했던 한 업체도 한 달이 지나도록 역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물론 하청업체에 줄 식자재 대금까지 밀렸지만, A시는 기다리라는 말 뿐입니다.

도시락업체 관계자

처음에는 성금으로(대금을)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국비로 주는 것으로 바뀌어서 (A시가)국비가 어떻게 지급이 될지 아직 확답이 안 났다. 자기(A시)들도 확답을 줄 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그 뒤로는 따로 연락이 온 것도 없었고.

감염병에 대응하라고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 예산은 549억원입니다. 그런데 A시가 이 예산을 받아 놓고도 집행을 제때 하지 않고 있습니다.

A시 담당 공무원은 자금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코로나19로 전이나 마찬가지로 상황이라고 해명합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A시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로부터 549억 원의 긴급예산을 받아놓고도 집행을 제때 하지 않아 병원 방역소독업체와 도시락납품업체 등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시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긴급예산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사용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으며, 감염병예방법 67조와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하면 병원 방역소독비나 도시락 대금과 같은 경비는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비'로서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A시가 병원 방역소독비와 도시락 대금 등 관련예산을 받아놓고도 집행을 제때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프로그램 방영중에 위 보도문을 방송하되,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조정대상보도 중에 사용된 관련 화면을 방송하면서 위 보도문의 본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의 이행결과를 당일치 방송분과 함께 방송 홈페이지의 뉴스 섹션 내 최신 VOD(다시보기) 코너에 등록해 시청자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한다.

사례 5 2020서울조정832/833 / 각 정정청구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발표가 ‘가짜 뉴스’ 논란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근거로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부처가 결론이 나지 않은 FDA 코로나19 진단키트 승인 건을 다 처리된 것처럼 부풀려 발표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우리나라 업체의 진단키트가 FDA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부풀려 발표했다는 왜곡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우리나라 3개 업체의 진단키트가 미국 FDA 사전승인을 받음으로써 대미 수출에 문제가 없게 되었음을 미국 정부가 신청인 부처에 통보해온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생산한 진단키트 75만 검사 분량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실제 수출된 바 있다.
- 사전승인을 받았던 3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이후 FDA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부처가 혼동을 초래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항변했으나,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내 3개 업체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정부가 “국내 코로나 진단 키트가 미 식품의약국(FDA)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가 ‘가짜 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 방역이 세계 최고”라고 홍보하기 위해 결론이 나지 않은 FDA의 진단 키트 승인 건을 다 처리된 것처럼 부풀려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관련 기업들 주식이 ‘테마주’로 언급되며 연일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예민한 상황에서



정부의 선부른 발표로 관련 업체들의 업무에 큰 혼선이 빚어졌다.

A부처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7일 우리 국산 진단 키트 3개 제품의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산 진단 키트의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승인되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했다. 하지만 29일 오후 6시 현재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FDA의 ‘긴급사용승인(EUA) 허가 리스트’에는 국내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A부처가 결론이 나지 않은 FDA 코로나19 진단키트 승인 건을 다 처리된 것처럼 부풀려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3월 27일 국내 3개 업체의 진단키트가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 받았음을 미 정부가 통보해왔으므로 A부처의 발표가 ‘가짜 뉴스’라는 제목은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지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크기·활자체는 각각 조정대상기사 부제목 및 본문의 크기·활자체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위의 보도문을 통상의 기사 게재 방식대로 72시간 동안 게재하고,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6 2020경남조정41·42/43·44 / 각 정정·손배청구

제보내용을 신뢰하여 보도하였으나 조정 심리 중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신문 지면 1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를 게재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A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A병원이 이를 감추려 하였고, 보호자가 요청하는 진료기록부 발급 및 CCTV 조회 요청을 거부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으며 병원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허술하고 시설이 열악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폭행사건을 감춘 사실이 없고, 진료기록부 등 발급 절차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CCTV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른데도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A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환자의 눈 부위 멍자국에 대하여 설명을 했고, 환자로도 병원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진술했으며 멍자국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하여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 A병원의 진료기록부 등 발급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CCTV 조회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명확하게 근거를 대고 있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B군 A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10여 일간 입원 중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얼굴·눈 부위에 심한 타박상(상해 2주)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보호자 C씨에 따르면 “환자는 저희 어머니인데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입원 중 심한 폭행을 당해 얼굴이 엉망이 됐는데 병원측은 가해자를 밝혀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C씨는 지난 13일, 어머니 퇴원을 위해 병원 방문, 폭행으로 얼룩진 어머니 얼굴을 본 뒤,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 병원측에 진료기록부와 CCTV 조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간호사는 “주말이어서 안된다”, ‘담당과장이 자리에 없어 결재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를 강력하게 내세워 조회를 거절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략]

만일 의료기관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임에도 위와 같은 내부규정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1항 후단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C씨는 “의료법 제21조 1항 및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죄를 물어 A병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B군 A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사건이 발생해 A병원이 이를 감추려 했고, 보호자가 요청하는 진료기록부 발급 및 CCTV 조회 요청을 거부해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병원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허술하고 시설이 열악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약한 푸르스럼한 눈 부위 멍자국에 대해 설명을 했었고, 환자는 계속적으로 병원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그 멍자국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재 B군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A병원에서의 진료기록부등 발급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준수하고 있었고, CCTV 조회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함을 파악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B군 A병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고 환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1면에 위의 보도문을 박스기사 형태로 게재하되, 제목은 고딕체로 볼드처리하여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의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좌측 기사목록에 통상의 기사목록 제목 크기로 위의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자료사진은 조정대상보도에 삽입된 신청인 병원 전경으로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위의 보도문을 기사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각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해당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다음(DAUM)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포털사이트 사업자에게도 위 각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7 2020경기조정231·232 / 정정·손배청구

사설인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A시 시장 재임 당시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돈이 되는 사업만 펼쳐왔고, A동굴을 개발하면서 정치자금을 확보했다는 의혹들이 돌고 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해당 사설에서 보도한 의혹은 모두 소문에 기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기사화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보도에서 언급된 인물과 소문은 허위이다.

■ 조정결과

보도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정정보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소문에 의한 설은 A시장 민선 5~6기 8년간 시장이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돈이 되는 사업만 펼쳐왔고, A동굴을 개발하면서 많은 정치자금을 확보를 했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

또한, A역세권 개발에 있어 시장이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상업 업무지역으로 역세권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주거 공간 아파트 건설이 함께 개발 되면서 A역세권 개발의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가 소문을 타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정치자금으로 B정당과 중앙언론 그리고 검찰까지 자금이 부러졌다는 설이 돌고 있다.

설에 의하면, 엄청난 규모의 정치자금 확보는 A시설공단 설립과 이후 A도시공사를 통해 가능했다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 보도내용

본 신문은 뉴스>칼럼>사설면에 조정대상보도인 사설을 통해 C국회의원의 A시장 재임시절과 관련 하여 'A동굴 및 A역세권 개발을 통한 정치자금 확보와 리베이트 배포' 등의 내용을 기사화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C국회의원에 대해 해당기사에서 제기한 일체의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해당기사 내에서 언급된 인물들과 관련된 소문 또한 기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모두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칼럼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의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위에서 언급된 조정대상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각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의 보도문의 해당 내용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8 2020서울조정1902·1980/1903·1981 / 각 반론·정정청구

신청인 대학의 청소용역원 해고, ‘갑질’사건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관계 부분은 정정, ‘갑질’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대학이 경영난을 이유로 청소용역원을 해고하고, 노조가 생긴 후 잡무를 시키기 어렵게 되자 청소용역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으며 직접고용으로 노조원을 회유했다고 지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청소용역원들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일 뿐 청소용역원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며, ‘갑질’이나 회유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보도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청소용역원을 해고한 것이 아닌 용역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업무종료이다.
- 청소용역원의 근무장소 출입을 금지한 것이 아니고 정년이 도과되어 계약이 종료된 청소용역원이 무단으로 생활관을 출입한 것을 통제된 것이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무발 파종과 재배관리는 적법한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 기존인력의 절반인 7명을 직접고용 하겠다거나 직고용을 하겠다고 회유한 사실은 없다.

■ 조정결과

심리 당시 중재부에서 신청인 측이 청소용역원을 직접고용한 바는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로, 노조 설립 등을 방해했다는 내용 등은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므로 반론 보도로 합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신청인 대학과 청소용역원과의 고용 관계 부분은 정정, ‘갑질’ 부분은 반론으로 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A언론사의 취재를 종합하면, B대학 쪽은 지난 1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14명 전원을 계약 해지했다.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데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중략]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재정 문제를 핑계로 눈엣가시인 노조원들을 내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재정은 표면적 이유일 뿐이라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2015년 노조가 생기기 전까지 학교가 청소 외 업무를 광범위하게 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학교 안에 3천평 크기의 무밭이 있는데 노조가 생기기 전엔 청소노동자들이 파종하고 재배했었다”고 말했다. 노조가 생긴 뒤엔 고유 업무인 청소·미화 외의 일을 시키기 어렵게 됐다.

노조원인 청소노동자에 대한 ‘갑질’도 만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노동자 C아무개(69)씨는 4월 내내 근무 장소인 기숙사 출입을 금지당했다. 정년인 만 70살을 채웠으며 학내 관계자가 느닷없이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청소를 더럽게 한다’며 화장실 호스를 모두 압수해 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이 일일이 대야에 물을 받아 뿌리며 청소를 하기도 했다. C씨는 “노조 가입 전엔 이런 괴롭힘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노동자들에게 기존 인력의 절반인 7명만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를 “노조를 와해하려는 꼼수”로 봤다. 실제로 학교 관계자가 청소노동자를 불러 “따로 찾아오면 직고용도 해줄 수 있다”고 회유했다는 증언도 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B대학교가 경영난을 이유로 청소용역원을 해고하고, 노조가 생긴 후 잡무를 시키기 어렵게 되자 청소용역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노조원을 회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대학교는 청소용역원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용역제공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B대학교 측은 “용역제공업체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유는 청소용역원의 노조 가입과는 무관하고, 학교 측 관계자의 ‘갑질’ 및 ‘직고용 회유’ 또한 전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9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일반>사회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활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하게 하며, 게재 24시간 후에도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하되,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동일하게 하며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등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9 2020서울조정1911·1912/1913·1914 / 각 정정·손배청구

SNS 게시물만으로 공인인 신청인이 문제성 발언 등을 했다고 단정보도한 데 대해 게시물 작성자가 기억의 오류를 시인함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기관장인 신청인 A씨가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있을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C검사장을 쫓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E변호사의 페이스북 내용을 인용해 지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씨는 B방송사가 ‘의혹 보도’를 종료한 후 E변호사와 통화했고, E변호사 또한 자신의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며, 거대 언론사로서 시청자들에게 영향이 큰 피신청인이 검사장과 언론사 기자의 유착 의혹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허위 내용을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A씨는 B방송사 뉴스프로그램에서 C검사장과 D방송사 기자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 B방송사 보도 몇 시간 전에 E변호사에게 전화하여 C검사장을 내쫓을 것이고 이를 위한 B방송사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보도에서 인용한 SNS 게시물 작성자인 E변호사가 통화 시점에 대한 기억의 오류를 시인하면서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청인 A씨가 보도내용을 미리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D방송사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D방송사 전 기자 F를 기소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5일 새벽 2시쯤, 한 페이스북 글이 법조계에 퍼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E변호사가 잠깐 올렸다 삭제한 글이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한 E변호사는 현 정권의 검찰 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페이스북에 꾸준히 써왔다. E변호사는 이 글에서 “B방송사의 C씨와 D방송사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C씨는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폐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며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중략]

E변호사는 이어 “몇 시간 후 C씨의 보도가 났고…그 전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필요치 않았다”고 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3월 31일 B방송사 뉴스 프로그램 보도 전에 미리 A씨가 보도내용을 알았다는 E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A씨는 “B방송사 보도 후 1시간 이상 지난 오후 9시경에 통화가 이뤄졌으며, 통화내용 또한 B방송사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 제2면 <바로잡습니다> 란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섹션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한 이후 24시간동안 고정하여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24시간 게재 이후에도 위의 보도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이어 게재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0 2020부산조정39·40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 정정보도를 게재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C교회의 담임목사 A가 교인들 몰래 이단인 B교회에 교회를 매각하여 교인들이 찬, 반 양측으로 갈라져 지금까지 재판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매각대금이 목사 개인명의 통장에 들어있고, 노회 중진 목사와 총회 감사부원이 A목사와 짜고 교회 분립에 개입했다고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A목사로 보도된 신청인은 교회매각을 주도하지 않았고 당회 등 절차를 거쳐 매각이 결정된 것이므로 교인 모르게 매각한 것이 아니며, 매각대금도 교회명의 통장에 적립되어 있고 다른 목사들과 짜고 분립을 시도한 것이 아닌데 왜곡보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천만 원을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 A목사가 교회매각을 주도하지 않았고 당회원들이 주장하여 매각되었다.
- 교회 매각은 A씨가 교인들 모르게 한 것이 아니라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 등을 거쳐 추진된 것이다.
- 매각 후 교인들이 찬반 양측으로 갈라지지 않았고 함께 수습위원회를 조직하여 매매무효소송을 진행했다.
- 교회 매각대금은 신청인 개인 통장이 아닌 교회 명의로 된 예탁금 통장에 적립되어 있다.
- ‘개혁위원회’측과 분립 제안에 응한 바 있으나 다른 목사들과 사전에 결탁한 바 없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보도에 신청인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입수한 자료 및 취재내용에 의거,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중재부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 부분 중 ‘매각대금이 신청인 개인명의 통장에 있다’는 부분은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로 볼 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정보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 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 게재를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예정합동 D노회 소속 C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단에 교회를 매각 후 재산을 나눠먹기 하려다 실패하는 사태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교회분립 과정에서 노회의 중진 목사 2명과 총회 감사부원인 목사까지 개입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E시 소재 C교회는 지난 2017년 7월 당시 E시 F동에 위치한 교회를 담임목사인 A목사가 교인들 모르게 이단인 B교회에 35억원에 매각한 후 이를 두고 교인들은 찬,반 양측으로 갈라져 지금까지 재판은 계속해오고 있다. [중략]

이와 함께 거액의 매각대금은 A목사의 개인 통장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교회 분립이야기가 흘러 나오게 된 것이다.

이를 주동한 인물은 다름아닌 D노회 중진인 G목사와 H목사, 그리고 총회 감사부원인 I목사 등이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예정합동 D노회 소속 C교회의 A담임목사가 교인들 몰래 이단에 교회를 매각하여 이를 두고 교인들이 찬, 반 양측으로 갈라져 지금까지 재판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노회 중진 목사와 총회 감사부원이 A목사와 싸고 교회 분립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목사는 “교회의 매각은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 등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매수자가 이단인지 알지 못한 채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후 교회를 되찾기 위해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승소하지 못하고 마무리된 상황이며, 더 이상의 분쟁을 원치 않아 이른바 ‘개혁위원회’측과 분립 제안에 응한 바 있으나 다른 목사들과 사전에 결탁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위 기사 중 ‘거액의 매각대금이 A목사의 개인 통장에 들어 있다’는 부분은 ‘교회 명의 통장’에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의 보도문을 신문 제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단, 보도문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사례 11 2020대전조정41·42 / 정정·손배청구

지역언론사 편집국장의 부인이 놀이공원에서 폭언을 하고 고등학생인 그 아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게재와 손해배상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지역언론사 편집국장의 부인이 놀이공원에서 폭언을 하고 고등학생인 그 아들이 담배를 피웠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편집국장(신청인 1)의 자녀(신청인 3)가 놀이시설 이용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해당 업체에서 장시간 자녀를 방치하여 배우자(신청인 2)가 항의한 것을 폭언했다고 기사화하고, 고교 재학생인 자녀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담배를 피우는 불량학생으로 보도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편집국장의 배우자는 폭언을 하지 않았고, 그 아들도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으며, 편집국장도 언론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정정보도와 함께 기자가 정보공개청구한 것을 취하하고, 향후 신청인에 대한 후속보도를 하지 않겠으나 손해배상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리 결과, 해당 보도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커 정정보도를 톱기사 형식으로 게재하고 상징적인 액수이나 손해배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보도 1]

[전략] 이날 수많은 인파가 있는 곳에서 A언론사 편집국장 부인 B씨는 아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며 항의를 했다. [중략]

C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D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팀장)으로 D군내 장애인



가족을 모를 리 없다. “나는 그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며 취재기자에게 모든 자료(CCTV)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취재기자는 당시 상황을 지켜본 주인을 만나 상황을 취재하며 제3자의 의견을 듣던 중 “남편(A언론사 편집국장)은 옆에서 서있고. 부인 B씨가 큰 목소리로 항의해 남편의 직업이 뭔 줄 알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B씨의 아들은 무엇을 했나. C랜드 관계자는 “B씨 아들은 친구들과 공원 옆에서 담배를 피고(D군 E고등학교 재학중) 있었다. CCTV에 담배 피는 영상이 찍힌 것이 있다”라며 답변을 해왔다. [후략]

[보도 2]

[전략] 지난 2일 오후 11시 20분 제보를 받을 당시 제보자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기로 해 취재가 시작됐다. 3일 제보자에게 확인결과 정보제공 동의를 있었으며, 4일 오후 3시까지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나 어떤 외압이 가해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더 이상 정보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중략]

B씨는 아들이 허리를 다쳐 D군 소재 정형외과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 사무국장의 말을 빌어 군대도 못 갈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기자는 치료받고 있는 정형외과 사무국장을 만나 본인이 환자의 병명을 확정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냐고 묻자 정형외과 병원장님의 진단소견을 보고 알려줬다고 했다. 그러나 정형외과 병원장은 만날 수가 없었다. [중략]

언론사들마다 기자의 윤리강령이 존재한다. 기자는 품위유지 조항으로 공과 사는 구분지어 활동을 해야 하는 직업군이다. 언론인은 공인으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인이기 이전에 한 학생의 부모라고 해도 본인의 직업이 언론인이라면 자신이 언론인인 걸 아는 지역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의 언행 불일치는 자신의 살을 깎아 먹는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A언론사 편집국장의 부인이 놀이공원에서 폭언을 하였으며, 고등학생인 그 아들이 담배를 피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배우자는 폭언을 하지 않았고, 그 아들도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으며, 편집국장도 언론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번 보도로 인해 지역신문사의 편집국장 가족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크나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의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 및 칼럼/연재면에 게재하되(게재방식은 통상의 기사와 동일하게 하되, 홈페이지 상단에는 톱기사 형식으로 7일간 게재한다),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한다(제목은 굵게 한다). 또한,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합해서 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기자는 신청인 2.가 재직하는 복지관 및 신청인 3.이 다니는 학교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고, 피신청인 및 기자는 신청인들 및 신청인들 가족과 관련된 후속 보도를 일체 게재하지 않는다.



사례 12 2020서울조정2236·2237/2238·2239 / 각 정정·반론청구

중재부가 보도문 게재안을 제시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보도문 확인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A시(市)가 태양광 설치 시공업체들에 설치비를 평균 약 4배가량, 최대 약 70배가량 단가를 높여 지급했으며 공공 태양광 설치 건수가 정권에 따라 증가했다고 지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A시는 태양광 시공사에 설치비를 부풀려 지급한 것은 부정확한 산정식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며, 설치비가 문제된 B자치구 교통체험관 태양광의 관리주체는 A시가 아닌 B자치구이고, 태양광 보급이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정권과는 무관한데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론 및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A시가 설치비를 부풀려 지급했다는 내용의 근거 수치는 잘못 산출된 수치이다.
- 설치비가 문제된 B자치구 교통체험관 태양광의 관리주체는 A시가 아닌 B자치구이다.
- A시의 공공 태양광 설치 건수가 정권에 따라 증가한 것은 아니며 A시의 태양광 보급 증가율은 세계 및 전국적인 추세에 미치지 못한다.
- 태양광 설치 단가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C의원의 일방적 의견을 게재하였으나 태양광 설치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A시가 태양광 시공사에 설치비를 최고 70배 부풀려 지급했다는 부분에 한해 정정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나, 중재부는 공공 태양광 설치 주체 등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보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도게재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보도문 확인 후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중재부가 정정 및 반론보도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A시가 태양광 설치 시공업체들에 1kW당 설치비를 평균 약 4배가량 부풀려 지급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최대 약 70배가량 단가를 높여 받은 업체도 있었다. [중략]

A시의 공공 태양광 설치 건수는 이명박 정부 때 280건, 박근혜 정부 때 359건, 문재인 정부(올 7월까지) 때 431건으로 증가했다. D사는 2017년 13억3700만원을 받고 A시 B교통체험관에 태양광 설비 시공을 했다. 1kW당 1억1300만원을 받았다. 평균 단가보다 70배가량 돈을 더 받은 것이다. E사의 경우 2018년 F역, G역, H역 변전소 등에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원래 단가보다 6배 많은 1kW당 1000만원을 받고 시공했다.

C의원은 “태양광 기술이 발달하면 단가도 그만큼 줄어야 하는데,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가 세금으로 이 업체들에 부당한 이익을 준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A시가 1,078개의 공공 태양광 시공사에 설치비를 최고 70배, 평균 약 4배가량 부풀려 지급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시가 태양광 설치비를 최고 70배 및 평균 약 4배 가량 부풀려 지급한 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A시는 “태양광 설치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발주처에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A시가 추진하는 모든 태양광 시공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태양광 보급이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정권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항목들을 이행한다.
- 신문 종합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크기는 통상의 부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3 2020서울조정2572·2573 / 정정·반론청구

체육시설 시스템을 시공하는 신청인의 시공 소재가 인체 유해성 등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학술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시의 B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시공소재로 검토중인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가 환경오염, 인체 유해, 고가 시공비, 과다 유지·보수비용 발생 등 문제가 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체육시설 시스템을 시공하는 신청인 회사는 A시 B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설계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신청인이 시공하는 FRP 수영장을 대부분의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으며, 인체 유해, 과다 유지·보수비용 등 문제점이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FRP는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안전한 소재이며, A시 B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공을 검토 중인 FRP 수영장은 충분한 안전성 및 안정성 검증을 받았다.
- FRP로 시공한 지자체 운영 수영장이 다수 존재하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 FRP 수영장은 유해물질 발생의 우려가 적고,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줄이는 한편 튼튼하고 경제적이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21개 지자체에서 FRP로 시공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FRP 소재의 인체 유해성 관련 학술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게재를 제안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시가 오는 2024년까지 건립예정인 B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내 수영장을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로 시공기로 결정하고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9억여원을 들여 조성하는 수영장 수조(유아풀: 12m x 3레일, 성인풀: 25m x 4레일)를 환경오염, 인체 유해, 고가 시공비, 과다 유지·보수비용 발생 등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는 FRP소재 시공을 왜 유독 A시만 고수하고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중략]

FRP는 유리섬유와 불포화 폴리에틸렌수지, 경화제, 파라핀왁스 등으로 만든 플라스틱이다. 가루에 노출될 경우 현기증, 두통, 의식불명, 피부홍반, 결막염 등을 일으킨다. 해체 후 불에 태우면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특히 부유 상태의 유리섬유 입자가 피부·점막 등에 접촉하면 각종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FRP업계 관계자는 “FRP 구조물은 내구성 및 안정성이 약해 2~3년 주기로 도색을 해야 하는 등 과다한 유지보수비용 발생으로 경제성이 낮다”며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수명이 짧아지고 유리섬유가 걸로 드러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귀띔했다. [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A시의 B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시공소재로 검토중인 FRP 소재가 인체유해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FRP로 시공한 지자체 운영 수영장이 다수 존재하고, FRP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한 학술적 검증 결과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사회면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활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방식과 동일하게 하며, 게재 24시간 후에도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위의 보도문 본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하되, 활자 및 크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과 동일하게 하며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등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4 2020서울조정2798/2799 / 각 정정청구

신청인과 피신청인 언론사간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한 데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를 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자치구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양 당사자였던 신청인 자치구와 피신청인이 당시 반론보도 게재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마치 신청인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처럼 허위보도하여 독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치구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성립은 신청인 자치구와 언론사의 쌍방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해당 자치구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A자치구 부구청장 과잉 의전 관련 보도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중 반론보도에 대해서만 합의하여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항변했으나, 중재부는 정정보도가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정정보도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당사자가 이에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본지가 보도한 'A자치구 부구청장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과잉 의전'기사에 대해 '과잉노동 사실이 없다'며 A구청이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1500만원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략]

A구청은 10월 27일 A구청 홈페이지 해명자료 코너를 통해 “부구청장 전용차량 운전직 공무원의 차량 운행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남짓으로 과도한 의전이나 과잉 노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A구, 부구청장, 운전직 공무원에게 각 500만원씩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A구청의 해명은 “출발 5시 30분·도착 21시의 의미는 차량의 최초 운행시간과 마지막 운행시간을 기재한 것이며 실제 운전은 4시간미만으로 과잉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12월 2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A구청이 요구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구청 직원들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을 원활하게 배차 받고 부구청장의 전용차량 운행은 관련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며 출퇴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코로나 19 대응 업무 등 신속한 현장 대응 등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A구 측 반론보도문을 실는 것으로 조정 합의했다. [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 지는 지난 12월 14일 지면에, 12월 15일 인터넷에 조정대상기사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성립은 A구와 본지의 쌍방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A구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항목들의 이행을 완료한다. 신문 1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 3번째 이내에 위의 보도문의 제목을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의 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